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이정문
김기표 · 이연희 · 장경태
홍기원 · 박균택 · 이해식
박해철 · 권철승 · 김남희
송옥주 · 최혁진 · 조정식
박지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란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음향 장치를 포함한다. 의장 및 위원장은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5조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및 제16호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48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 의장 및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생략)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란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음향 장치를 포함한다. 의장 및 위원장은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제148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u>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u>

<u>10.</u> ~ <u>16.</u> (생략)	<u>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u> <u>음식물을 반입해 의장 및 위</u> <u>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u> <u>를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아</u> <u>니하였을 때</u> <u>11.</u> ~ <u>18.</u>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	--